| 의 시품의약품안전체 보도참고자료 (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)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보도 일시 | 배포 즉시 | 배포일 | 2023. 2. 21.(화) | | | |
| 담당 부서 |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김정연(043-719-3401) | | | |
| | | 담당자 | 연구관 김선미(043-719-3404) | | | |

식약처. 염모제 5개 성분,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

-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-

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o-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*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**하는 내용으로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2월 21일 개정·고시했습니다.
 - * (5종) o-아미노페놀, 염산 m-페닐렌디아민, m-페닐렌디아민, 카테콜, 피로갈롤
 - **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[별표1] '사용할 수 없는 원료'에 반영
 - o-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'유전독성'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'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입니다.
 - * 유전독성 :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. 참고로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고 함
 -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('23년 8월 22일)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·수입할 수 없으며, 이미 제조·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('25년 8월 21일까지)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.
 - 유예기간 동안 보다 **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나가고**, **사용으로 인한 노출을 줄여나가자는 의미**가 있습니다.



- □ 식약처는 고시 시행(개정 후 6개월)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 하여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 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
 -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(nedrug.mfds.go.kr) > 의약품등 정보 >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>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(심사) 및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(보고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□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,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·변경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 보존제, 염모제,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 총
 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*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*「화장품법」제8조 및「화장품법시행규칙」제17조의2
 - 역모제의 경우 '22년부터 '23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,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.
-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**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**가 사용될 수 있도록 **화장품 원료**에 대한 **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**하여 **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**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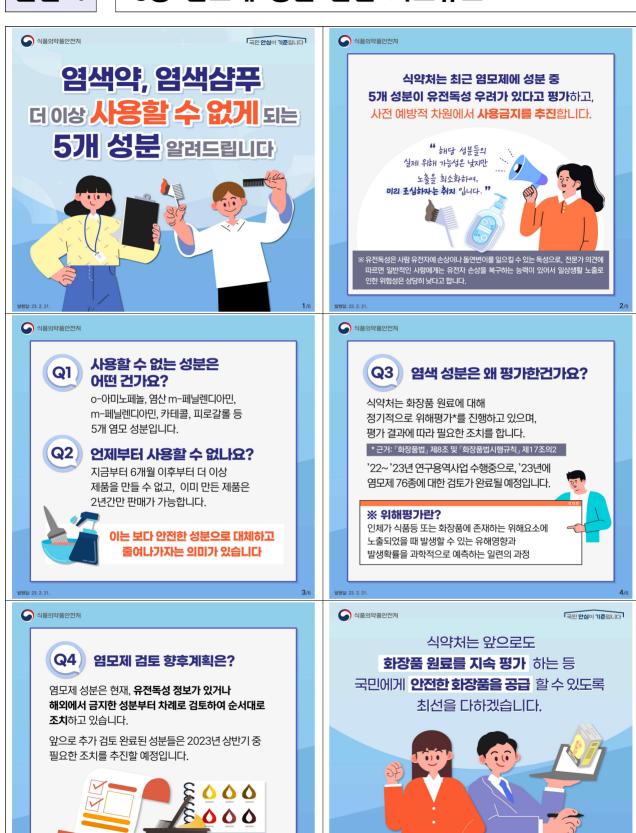
<붙임> 1. 카드뉴스

2. 각 부서별 담당자. 연락처



붙임 1

5종 염모제 성분 관련 카드뉴스







붙임 2

각 부서별 담당자, 연락처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담당 부서 <총괄> |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정연 (043-719-3401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담당자 | 연구관 | 김선미 (043-719-3404) |
| <기준> | 평가원 바이오의약품심사부 화장품심사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달환 (043-719-3601) |
| | | 담당자 | 연구관 | 김지연 (043-719-3602) |
| <위해평가> | 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 | 책임자 | 연구관 | 이주헌 (043-719-4853) |
| | | 담당자 | 연구관 | 김도정 (043-719-4852) |



